

재허가 신청 공고문

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에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(재허가 신청 대상) 2011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체 라디오방송국
- (신청기한)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
- (제출서류) 신청공문, 방송국재허가신청서,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, 서약서, 일반현황,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, 방송국 허가증 사본,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, 주간기본편성표, 요약본, 기타 첨부서류 등
- (제출처) (우) 110-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(세종로 100번지)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
- (제출방법)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(문의처)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(02-750-2436)

붙임 2011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 신청안내 1부.